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11.06	2009.11.09	2009.11.13	2009.11.13	기획감사과장
[2]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자치정보과장
[3]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사회복지과장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환경과장
[5]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환경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양성온천광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행사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民間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추가 : 앙성온천광장 운영관리

②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 건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게시판 실명제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안 제3조)

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인터넷 게시문화 정착을 위해
실명제 운영(안 제16조)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및 홍보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 보상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③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단기보호
-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 사항

나. 위탁운영 (안 제7조)

-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해지 사유를 정함 (안 제9조 · 제10조)

④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0년 쓰레기소각장 준공에 따른 가연성 · 불연성 쓰레기의 본격적인 분리 배출의 시작을 대비하고,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판매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봉투판매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개정(안 제3조)

- 생활폐기물 배출일 및 배출시간 세부규정
- 연탄재 배출방법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규정 추가
-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관리자의 청결유지의무 추가

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내용 개정(안 제8조)

- 일반용봉투 와 가연성 봉투의 분리배출 부분 개정

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요건 추가(안 제8조)

- 쓰레기봉투 판매자가 쓰레기봉투 구입자의 현금 환불 요구 거절 금지조항)

마. 쓰레기봉투의 공급가격 개정 (별표 2)

- 쓰레기봉투 공급 이익률 상향 조정(6%→9%)

⑤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추진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항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환경부 지침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하는 행위
포상금 제외(별지 개정)
- 나.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한(안 제14조)
 - 1년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온천광장을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부적합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려는 것임.

본 광장은 금년 19회에 총 24일간 양성면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양성면사무소에서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본 광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단순 사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에 위탁하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됨.

[2]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충주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와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행사 참여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임.

○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전자민원창구'는 그동안 '사이버민원실'이란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자정부법」 제34조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전자민원창구'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명칭도 일치되도록 하는 것으로 인터넷 신청 민원의 종류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며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은 시민들께 쉽게 인터넷 민원창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므로 '전자민원창구' 이용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15조의 '주민참여마당'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열린시장실' 명칭이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고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각종 증명이나 신고, 허가 등 일반민원과 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생활민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돋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는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견전한 게시판 운영을 도모하고 게시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나 실명노출을 기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의2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의견 반영을 위해 참여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잘 활용한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금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은 시민들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정홍보와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음.

③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본 조례안은

충주시 문화동 2791번지에 신축 중인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이 오는 12월 완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이 시설은 금년 5월 착공하여 오는 12월 준공예정이며 재가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일시보호 하는 시설로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운영에 필요한 종사인원은 원장 1, 주간 관리 사회복지사 3, 단기간 관리 사회복지사 4명 등 8명이며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는 약 1억5천만원 소요되고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여 운영하게 됨.

○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시설의 운영은 장애인복지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안 제12조에 준용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에는 시설의 기능, 입소자격, 실비징수 근거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만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시에서 조례로 금액을 제시하고 시설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의 명칭도 복지시설종류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시설명을 부여하는 것이 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④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개정안은
내년에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되어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되어있어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요율이 낮아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안 제3조 제1항의 배출시간 변경은 일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현 수거실정에 맞게 토요일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제2항은 연탄재에 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봉투나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함으로써 연탄재 수거시 수거인력의 안전 및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제7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부분이 개정되어 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사항임.
- 안 제3조의2는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신설한 사항이나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시 보관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이 되더라도 시설 설치대상이나 설치 규격 등을 따로 정해 일관성 있게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가연성과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재사용봉투에 담아야할 폐기물 종류가 구분되지 않아 용도가 불명확하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별표 2의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은 그동안 판매이윤을 6%정도로 하였으나 수수료가 적어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9%로 조정할 경우 시에서는 약 4천 5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나 판매기피 행위는 다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5]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개정안은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항구적으로 제외토록 지시한 규제 유예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관내거주자는 3명에게 52만원, 타지역 거주자는 5명에게 29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8건에 8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 건수가 없는 상황으로 미루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과 같이 충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신고포상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신고포상금을 직업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위탁관리 한다 하더라도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임.
 - 답변 : 그렇게 하겠음.
- ▶ 질의 : 수탁자는 누가 되는가?
 - 답변 : 담당부서에서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임.
- ▶ 질의 : 소요되는 예산은?
 - 답변 : 전기요금, 청소비용 등 약 2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질의 : 면에서 관리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 답변 : 행사가 주로 주말에 개최되므로 면사무소 보다는民間에 위탁하려는 것임.

②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주민참여마당과 열린시장실의 차이점은?
 - 답변 : 생활민원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접근하는 창구를 일원화하고자 함.
- ▶ 질의 : 실명제를 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을 것아닌가?
 - 답변 : 현재도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③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질의 : 시설명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답변 :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음.
- ▶질의 : 장애인부모회에서 계속 관리하는가?
- 답변 : 따로 공모하여 운영할 것임.
- ▶질의 : 어린이집과 병행할 예정인가?
- 답변 : 1층은 어린이집, 2층만 보호시설로 따로 운영됨.

④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연탄재는 무상으로 수거하는가?
- 답변 : 종량제 제외 대상임.
- ▶질의 : 연간 봉투판매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 답변 : 19억원 정도 됨.

⑤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많지 않은데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 답변 : 지금까지의 예로는 취지에 반하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임.

5. 심사결과

-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②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③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 ④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⑤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 임

-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 [3]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1부.
-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 [5]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자유게시판 운영)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자유게시판 운영) (1)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p> <p>(2) 시장은 건전하고 책임있는 게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게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실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p> <p>(3) 시장은 실명확인을 위하여 회원제운영, 공공인증 등 신뢰성있는 인증기관의 인증절차를 통하여 실명제 운영을 할 수 있다.</p>	<p>제16조(자유게시판 운영)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p>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1항 단서 중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실비징수) (1)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생략)	제7조(실비징수) (1) _____ _____ _____ _____ 감면할 수 있다. (2) (제정안과 같음)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항 ‘가연성은 가연성 봉투’ 다음에 ‘및 재사용봉투’를 삽입한다.

〈수정안대비표〉